

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'97.9.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가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내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, 기 운영중인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제8조 내용의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제한중 건축물의 용적율을 조정
 - 별표2의 내용중
 - 가. 용적율 250%이하, 층고 20층 이하로 하는 경우에서
 - 가. 용적율 200%이하, 층고 20층 이하로 하는 경우로 용적율을 조정

파주시 조례 제 호

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 가호중 “용적율 250%이하”를 “용적율 200%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【별표2】 (생략) 가. 용적을 250%이하, 층고 20층 이하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.	【별표2】 (현행과 같음) 가. 용적을 200%이하,----- ----- -----